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1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존치근거가 삭제되었으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절차 의무화에 따른 정보화 전략위원회의 개최실적 저조로 실질적인 기능 상실이 지속됨에 따라 위원회를 폐지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현행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5조)
- 나. 정보화전략위원회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6조~제12조)
- 다. 대표 홈페이지 정보관리시 담당 직원명을 제외하고 담당부서명만 명시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3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방 법 : 성북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 결 과 : 의견 없음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및 담당직원을 명시하는 등”을 “등을 명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② (생략)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유관기관 등 정보화 관	<삭 제>

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삭 제>

<삭 제>

회의 심의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정보 담당부서명 및 담당직원을 명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생략)

<삭 제>

<삭 제>

제3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을 명시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분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관련하여 추가 예상되는 비용 발생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됨

4. 작성자

행정문화국 홍보전산과장 최 혜 숙